

# (보건)유고결석 한 눈에 보기

※ **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(위조)로 제출**하여 2021학년도 **총 5명**, 2022학년도 1학기 **총 5명**, 2023학년도 **총 6명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** 되었습니다.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/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**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**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(출석인정의 예외)에 의해 유고결석 인정여부의 최종 승인은 담당교수의 권한임
- ※ 기말고사, 성적입력 및 평가, 계절학기 기간 신청 불가,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승인 불가
- ※ 유고결석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※ 질병 유고결석 모든 증빙서류는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(병원 주소, 연락처, 의사명 필수!)
- ※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가 되었으므로 일반 질병에 준하여 유고결석 인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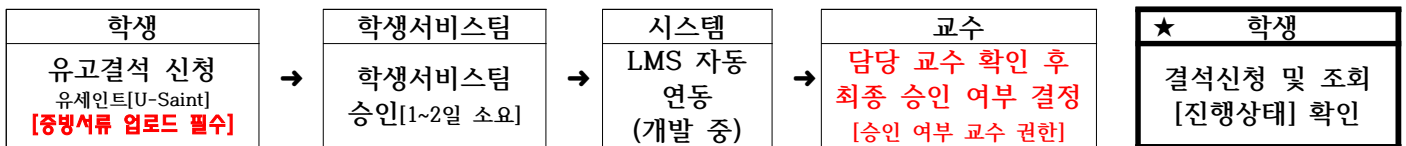
## # 보건결석 신청 [1회 1일 신청 가능, 학기 3회 제한] ※ 보건결석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없음

- 결석일 다음날부터 **7일 이내에 신청** 되어야하며, **7일 경과 시 추후 신청 불가**
- 여학생이 월경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, 결석사유에는 **“보건, 월경, 생리”로 기재하여야 승인 가능.**
- 기타질병(복통, 감기몸살, 병원치료 등)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(기타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신청)
  - 다음 신청은 **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**  
 [(예시) 5월 1일 보건결석일 → 5월 23일 보건결석 신청 가능]

## # 유고결석 신청 기한

- 결석 종료일 기준(결석일 포함) **10일 이내에 신청** 처리 되어야하며, **10일 이내 미신청 시 신청 불가**

## # 쉽게 보는 (보건)유고결석 절차 및 주의사항



## [신청방법 및 주의사항]

- 신청방법: 유세인트 - 학사관리 - 수업출석 - 결석신청 및 조회 - 결석신청정보[신청] 클릭 - 유의사항 확인 후 체크 - 결석신청 내용 입력 - 증빙 파일 업로드한 뒤 [신청] 클릭 - 결석적용 과목 체크 및 확인 후 [저장] 클릭  
 (※ “구분”란 항목은 결석사유에 맞게, 결석일의 해당과목은 한꺼번에 신청 필수)
- 결석구분은 “유고결석(병무관계, 혈족사망, 공식행사, 질병)” 중 선택하여, 결석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[여학생 월경통은 보건결석으로 신청 바람]
-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“거부”로 기재되며, 거부된 신청은 신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**결석일로부터 기간[유고결석 10일/보건결석 7일] 이내에 거부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신청** 되어야 합니다.
- 질병 유고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**진료 일자 및 병명 수기 작성은 반드시 해당란에 병원장 확인 도장을** 받아야 합니다.
- 기말고사, 성적 평가, 계절학기 기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.[본교 학사일정 기준]
-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, 대회, 행사, 기업 면접, 졸업 시험, 대외활동, 교통편 연착, 졸업 여행 등은 유고결석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**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은 본인에게** 있습니다.
- 학기 종료(기말고사) 시기는 성적처리로 인하여 결석 종료 시간부터 7일 이내에 승인**되어야 합니다.
- 학생서비스팀 승인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 유고 결석 사유 및 서류 보기

사유	예시	허용기간	증빙서류 및 안내
본인결혼	본인결혼	당일부터 7일	[필수] 혼인관계증명서 [필수] 청첩장 ※ 결혼식 당일부터 7일
혈족사망	2촌 이내	당일부터 5일	[필수]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 인정,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) [필수] 가족관계증명서 ※ 사망일(주말 및 공휴일) 포함 5일/3일 ※ 사망일 확인 및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
	4촌 이내	당일부터 3일	
질병	입·퇴원  2일 ~ 5주 미만 입원 [전염병 포함]	입원일자 (전염병의 경우 격리기간)	[필수] 입·퇴원확인서 [추가] 진료기록부(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,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) ※ 입·퇴원확인서에 반드시 입·퇴원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※ 입·퇴원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※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(병원장 성명, 병원 주소, 연락처 필수) ※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※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·처방전 및 안정·요양 인정 불가  ☞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 포함(전염성 내용 및 격리 일자가 포함 된 병원·의원 발행 진단서 필수) ※ 법령에서 지정한 전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
	당일	진료 당일 1일	[필수] 진료확인서 [추가] 진료기록부(병명 확인을 위한 서류, 명판도장 또는 직인 필수) ※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진료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※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서류 첨부 ※ 모든 증빙서류는 명판도장 및 직인 또는 병원장 도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함(병원장 성명, 병원 주소, 연락처 필수) ※ 진료·통원·소견·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병원에 확인 바람 ※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·처방전 및 안정·요양 인정 불가
병무관계	예비군, 병무 신체검사, 의경·공군 면접 등	당일 (최대 3일)	[필수] 신체검사확인서 또는 면접 후 받은 확인서 ※ 병무청·경찰청·군부대 발행된 관련 증빙서류 ※ 사전에 발급된 수험표(신청서) 인정 불가
공식행사	체육대회, 학과(부) MT	해당기간	[필수]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(연중 각 1회 허용)
	교육실습 현장실습 학술답사 학술대회	해당기간	[필수] 단과대 학장 승인 공문 필수  · 교육실습: 전공 수업 관련 교육실습 진행 시 인정 · 현장실습: 전공 수업 관련 현장실습 진행 시 인정 · 학술답사: 전공 수업 관련 학술답사 진행 시 인정 · 학술대회: 전공 수업 관련 학회에 참가 시 인정  ※ 강의계획서에 있는 커리큘럼, 전공 관련만 인정 ※ 교육 및 현장실습, 학술답사, 학술대회의 경우 전공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 전체 참석 시 인정 [학과 자체 학회 인정 불가] ※ 참가 이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※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인정 불가 ※ 학과(부), 행정부서, 소모임 등의 행사 관련 인정 불가
	기타	해당기간	[필수]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경우

※ 유고결석 인정기간: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

[문의: 학생서비스팀(학생회관 406호) ☎ 02-820-0162]